

상담경력과 집단상담 윤리 인식: 한국과 미국 집단상담자 비교연구*

권 경 인

광운대학교

김 태 선

한양대학교

조 수 연†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집단상담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집단상담 윤리적 범주들이 무엇인지 경력에 따른 차이와 국가 간 비교를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집단상담 전문가 228명(한국 122명, 미국 106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윤리요소들 가운데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집단상담 윤리 요소 질문지'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집단상담자의 경력별 비교에서 초심, 중간, 숙련의 세 집단의 집단상담자의 집단원 권리 보호 및 교육원리, 집단상담자 전문성 및 책임 윤리, 집단상담 구성 및 과정 윤리의 세 가지 윤리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미국 집단상담자의 윤리요소 중요성 인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 비밀유지, 집단상담 참여, 집단상담자 책임 및 전문성 범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집단상담자가 한국 집단상담자보다 윤리 중요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차이 및 특성을 윤리 교육 및 시스템,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집단상담 실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집단상담 윤리, 집단상담, 윤리, 전문가 윤리, 집단상담자

* 본 논문은 2017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조수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Tel : 02-888-5926, E-mail : syjo81@snu.ac.kr

집단상담은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김계현, 2010; 오연수, 한재희, 2009; Burlingame, Fuhriman, & Mosier, 2003; Fuhriman, & Burlingame, 2001; McRoberts, Burlingame, & Hoag, 1998). 따라서 국내의 여러 상담 관련 학회는 집단상담과 관련된 분과학회 및 연구회를 별도로 만들어 집단상담 영역의 전문성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상담 자격 수련기준에서도 개인상담과 구분된 집단상담 전문 수련기준을 부여하여 상담 분야 안에서도 특화된 전문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한 집단이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독점하고 있고,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문영역을 실행하는 전문가들이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도 필수 요소이다(명대정, 2000). 전문가 윤리는 전문가가 사회의 규범과 도덕적 윤리 위에서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도록 하며, 전문가가 일반적인 기능과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켜주므로(권경인, 조수연, 2015a) 전문가의 윤리 규범은 전문가가 사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 전문가 집단은 윤리 규범을 제정하고 교육하며 지키도록 강제한다.

상담도 상담자의 책임 있는 자율적인 전문 활동을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1953년에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한 후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으며,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도

지속해서 윤리 규범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집단상담은 다수가 참여하는 고유의 특수성 때문에 개인상담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역동이 일어나므로 기존의 개인상담 윤리만으로 집단상담의 다양한 윤리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Gladding, 2008). 또한, 집단상담의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은 임상 실제에서 윤리 강령이라는 규범적 틀로 기준을 세우고 관리 감독하는데 여러 한계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ACA는 집단상담 윤리강령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개인상담 윤리강령을 집단상담에 적용하기를 제안하지만, 집단상담 윤리를 개인상담 윤리만큼 중요하게 인식하여 상담자 윤리 강령에 “본 내용은 집단상담에도 적용.....”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집단상담 윤리도 상세한 기준과 내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권경인, 조수연, 2015a), ACA의 하위 학회인 미국집단작업전문가협회(Association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ASGW)는 집단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선의 상담 지침(Best Practice Guidelines)’을 별도로 마련하여 집단상담의 다양한 요소와 임상 실제의 상황을 고려한 윤리적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Corey, Corey, & Corey, 2013; Welfel, 2012).

한국의 상담 분야는 초기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학문을 받아들여 성장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국내 여러 상담 학회의 윤리 규정도 미국과 유럽의 윤리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조금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김화자, 2014). 한국상담학회는 미국과 독일의 심리학회의 윤리 기준을 참고로 하여 2002년 8월에 처음으로 윤리 규정을 제정하였고,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미국심리학회와 미국상담학회의 윤리기준을 참조하여 2003년 5월에 처음으로 윤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국내 집단상담 윤리강령은 따로 제정되지 않고 전체 상담 윤리강령의 틀 속에서 집단상담을 한 두 문장 정도로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하거나, 유일한 집단상담 윤리 강령인 집단상담학회의 윤리 강령도 8개 조항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분류하여 제정한 ASGW의 윤리 지침과 비교해보면 국내의 집단상담 윤리강령은 빠진 요소가 많고, 간단한 개념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다양한 측면의 윤리적 상황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권경인, 조수연, 2015a).

또한, 미국의 집단상담 윤리 연구는 집단상담의 운영의 시작인 집단원 선발 및 오리엔테이션부터 집단상담을 종결하고 추후 관리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각각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윤리적 상황과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다(Lasky, & Riva, 2006; Mangione, Forti, & Iacuzzi, 2007; McCarthy, Falco, & Villalba, 2014; Richie, & Huss, 2000).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집단상담 윤리지침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해서 윤리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집단상담 윤리 관련 연구는 2018년 현재 10편 이내로 간략한 개념에 대한 내용이나 비밀보장과 이중관계에 대한 측면 등에 국한되어 있어 충분히 집단상담 윤리에 대해 논의되지 않고 있으므로, 아직 집단상담 관련 학회에서 윤리 강령의 개정이나 지침 마련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의 집단상담은 발전하고 있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와서 집단상담 연구는 양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프로그램 개발 이외에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으로 집단상담 연구의 91.5%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성과연구이다(권경인, 조수연, 2010; 김계현, 2001). 성과연구 이외에도

과정연구나 개관연구, 이론연구도 집단상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이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Beck, & Lewis, 2000; Burlingame, Mackenzie, & Strauss, 2004; Graff, Griffin, & Weiss, 2008). 집단상담 윤리 연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집단상담 윤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상담 윤리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집단상담자들의 윤리 인식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윤리 인식과 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편이다. ACA의 윤리강령은 상담자 교육 및 훈련에서 상담자와 상담 교육자가 윤리 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Kaplan et al, 2017). ACA 산하 상담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준위원회(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CACREP)는 상담 교육에서의 첫 번째 핵심 영역으로써 윤리적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부분 상담 심리 및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 전공에 해당하는 석사, 박사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최소 1개 이상의 상담 윤리 관련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모든 주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시험인 심리전문가시험(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 EPPP)의 8가지 영역 중 하나가 윤리적, 법적, 전문적 이슈(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issues)이며, 대부분의 상담 인턴십 프로그램은 윤리적 수행을 익히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APA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윤리 교육 활동에 공로가 큰 상담심리학자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상담에서 윤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전문가 강령이나 지침, 교육 및 수련의 필수사항으로 포함하는 시스템적 장치가 조직되어 있다.

반면 국내의 학교상담자 윤리 교육 및 인지 실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자의 비율은 49.8%로 나타났으며, 윤리교육은 독립된 교과목이(9.2%) 아니라 상담 관련 교과목에서 일부로(61.8%) 다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동현, 2009). 일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연구에서도 6.3%만이 독립된 상담윤리를 다루는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강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최혜림, 2002). 강진령 외(2009)의 연구에서 윤리강령을 읽어보았다는 응답자는 68.6%로 한국의 상담자들은 윤리강령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고, 이는 교육받고자 하는 동기가 높지 않은 것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집단상담 수퍼비전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내용 중에 윤리교육을 원하는 상담자는 많지 않았는데, 이러한 낮은 윤리교육에 대한 요구는 집단상담자의 상담경력과 무관하게 낮았다(이미선, 권경인, 2009). 즉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담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윤리 규범과 교육, 윤리 연구의 양적 질적 차이를 만드는 한 요소이다. 따라서 한국의 집단상담 윤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자들의 윤리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윤리적인 의사결정은 각 나라의 문화적인 요인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며(김영

욱, 2003), 상담자의 가치관이 윤리적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므로(Brabender, 2006), 여러 이익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윤리적 딜레마가 생기는 상황에서 윤리강령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 문화에 따라 윤리강령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Leach와 Harbin(1996)은 24개국의 윤리강령을 비교했는데,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의 윤리강령들은 비교의 기준이었던 APA 윤리강령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에, 중국의 윤리강령은 APA 윤리강령과 공통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싱가포르, 홍콩의 윤리강령들 역시 비교적 유사점이 적은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여러 윤리강령 주제들 가운데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가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윤리강령이었고, ‘법정 관련 활동’이 국가별 비교에서 가장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Hofstede(1991)는 40개 국가의 문화를 분석하여 문화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고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 거리(power distance)’, ‘불확실성 회피’, ‘남자다움·여자다움’이라는 4가지 문화 차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개인주의 지수가 낮고, 미국은 개인주의 지수가 높았으며, 한국은 권력 거리가 높았으며, 미국은 권력 거리가 낮았다. 권력 거리가 낮으면 부하가 상사에 의존하는 정도가 약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권력 거리가 높으면 부하와 상사의 심리 거리가 크며,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드물어진다. 또한,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낮고, 미국은 높게 나왔는데,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을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표현하며, 공식적인 규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률과 규칙의 수가 많고 명료한 경향이 있다.

반면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낮으면, 자아를 감시하는 무의식적 양심의 수준이 낮으며 이의 제기에 관대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남성지수가 낮으며, 미국은 높게 나왔는데, 남성지수가 높으면 대체로 자기주장이 강하고, 거칠다고 가정하며, 남성지수가 낮으면 부드러우며,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가정한다. 남성적 사회는 강한 자에게 공감하며, 투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며, 여성적인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약한 자에게 공감하며, 화해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Hofstede, 1980; 1991; Triandis, 1988).

한국과 미국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집단상담 윤리의 발달과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집단상담 윤리에의 강조점과 시스템 체계, 그리고 전문가 윤리 인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단상담 윤리의 세분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나라별 중요도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타 국가의 윤리 강령이나 교육 프로그램, 윤리 연구 등을 우리나라에 맞게 개정할 때, 어떤 요소를 더 고려하고 반영하며 교육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적 특성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해 다루고 있지 못하거나 놓치는 윤리적 범주에 대해 분명한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윤리적 체계를 갖추고 교육하는데 고려할 실제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상담자들의 학력에 따라 윤리적 행동과 비윤리적 행동을 구별하는 판단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했을 때, 석사와 박사학위 소지자가 학사학위 소지자와 비교할 때, 높은 학위의 소지자가 주어진 사례의 비윤리적 행동을 더 정확하게 찾아냈다(Robinson, & Gross, 1989). 상담자의 윤리에 대한 분별력과

학력은 Shertzer와 Morris(1972)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APGA(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학회원들의 윤리 분별능력을 평가했을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석사학위 소지자보다 어떤 행동이 윤리적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윤리 교육에 의해서 윤리 분별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윤리 변별력은 교육이나 사회 경력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위에 의해 윤리 변별력이 차이가 난다면 상담자의 경력에 의해서도 윤리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심 상담자와 숙련 상담자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단순히 주어진 지식(received knowledge)보다는 스스로 구성해나가는 지식(constructed knowledge)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Skovholt, & Rønnestad, 1992) 초심 집단상담자는 주로 교육을 통해서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발달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지만, 숙련 집단상담자는 개인의 경험과 자아 성찰을 통해 전문성과 가치관이 발달한다(권경인, 지희수, 강신호, 김미옥, 2012). 즉 초심 집단상담자의 윤리 인식은 상담자의 윤리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숙련 집단상담자의 윤리 인식은 집단상담 경험에서 나오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사회 전반적 가치관과 자아 성찰 등을 통해 영향을 받으며 발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초심과 숙련 집단상담자의 윤리 요소별 인식 차이 비교는 초심 집단상담자에게 개발되어야 할 윤리 인식 요소를 확인하도록 해주어 초심 집단상담자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필요한 윤리적 요소 및 민감성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숙련 집단상담자도 이미 알고 있는 윤리 지식이지

만, 민감성이 둔감화 되었거나, 문화적 측면에서 더욱 보완되어야 하는 요소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상담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상담 학문과 방식을 받아들여서 발전해 온 측면이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담자의 인식, 특성, 어려움 등에서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있지만(노안영, 1998; 서영석, 2005), 여전히 대부분 상담이론과 방식은 한국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이지영 외, 2008). 단순히 미국의 윤리지침과 윤리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이를 우리 문화와 상담 현장에 적합한 윤리지침과 교육 시스템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상담자의 경력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집단상담자들이 각각 집단상담 주요 윤리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경력뿐 아니라 국가 간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윤리 인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집단상담자의 윤리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며, 집단상담 윤리 강령 개정, 윤리 지침 마련, 윤리 교육 교육의 주제, 윤리 연구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집단상담자 경력별 윤리 요소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여 이후 윤리 인식 고취를 위한 대안 마련에 경력별 효과적인 윤리 지침 마련 및 시스템 확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집단상담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한국과 미국의 집단상담자 총 228명(한국 122명, 미국 1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집단상담자는 1차로 전국에 있는 상담소에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차로 학회 세미나 등의 오프라인 장면에서 설문지 응답, 3차로 집단상담 수련감독급 자격 취득자 중 이메일 정보를 공개한 대상에게 개별 메일을 통해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다. 자격조건이 맞지 않은 응답자와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설문 총 6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미국 집단상담자의 경우는 1차로 대학상담센터 director 또는 training director에게 협조 메일을 보냈고, 이들이 다른 상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2차로 AGPA(<http://www.agpa.org>) 집단상담 전문가 리스트에서 개인 이메일 정보를 오픈한 대상에게 연구의 목적 및 연구참여자격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다. 자격조건이 맞지 않은 응답자와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설문 7부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가 집단상담에 대해 실제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윤리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실제 상담 현장에서의 집단상담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된 대상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별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집단상담자 경력은 표 1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한국 집단상담자는 초심 49명(40.2%), 중간 41명(33.6%), 숙련 32명(26.2%)으로 총 122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국 집단상담자는 초심 41명(38.7%), 중간 34명(32.1%), 숙련 31명(29.2%)으로 총 106명에 대

표 1. 집단상담자 경력 기준표

구분	Kivlighan, & Quigley(1991)	Browne(2002)	본 연구
초심	집단훈련과정 1단계	집단훈련과정 미 이수 운영 집단 0개	석사 이상 집단경력 1년~3년 미만
중간	-	집단훈련과정 1단계이상 운영집단 1~5개	석사 이상 집단경력 3년 이상~9년 이하
숙련	집단상담 지도자 1000시간 이상	집단상담 지도자 500시간 이상	석사 이상 집단경력 10년 이상

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한국 참여자에게는 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고, 미국 참여자에게는 10달러 아마존 기프트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연구 응답자에 대한 기초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을 보면, 한국 집단상담자는 여성이 88.5%이며, 미국도 여성이 72.6%로 참여 집단상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상담자의 연령 범위는 한국의 경우 23세부터 62세($M=40.85$, $SD=8.64$)이고, 미국은 23세부터 70세로($M=34.23$, $SD=8.93$) 미국보다 한국 집단상담자들의 평균

연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자의 상담경력 분포는 한국 집단상담자의 경우 1년부터 35년($M=7.88$, $SD=8.97$)까지의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미국 집단상담자의 경력은 1년부터 36년($M=9.08$, $SD=8.57$)까지의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한국과 미국이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을 최소 석사학위 이상자로 제한한 결과 최종 학력은 한국의 경우 석사학위 63명(51.7%), 박사학위 53명(43.4%), 박사후과정 6명(4.9%) 나타났고, 미국 집단상담자의 경우 석사학위 39명(36.8%), 박사학위 62명(58.5%),

표 2. 한국과 미국 집단상담자의 성별 및 기타 정보

한국(n=122)		미국(n=106)		
성별	남	14명(11.5%)	남	29명(27.4%)
	여	108명(88.5%)	여	77명(72.6%)
연령 범위	23세~62세		23세~70세	
상담 경력범위	초심	49명(40.2%)	초심	41명(38.7%)
	중간	41명(33.6%)	중간	34명(32.1%)
	숙련	32명(26.2%)	숙련	31명(29.2%)
최종 학력	석사	63명(51.7%)	석사	39명(36.8%)
	박사	53명(43.4%)	박사	62명(58.5%)
	박사후	6명(4.9%)	박사후	5명(4.7%)

박사후과정 5명인(4.7%)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소속기관별 분포를 보면, 한국 응답자의 30.3%가 대학 상담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청소년 상담기관 28.7%, 사설 상담기관(유료) 14.8%, 학교 상담실 12.3%, 기타 5.7%, 건강가정지원센터 4.9%, 기업 상담실 3.3%였다. 미국의 경우도 46.2%의 집단상담자가 대학 상담실 소속이었고, 학교 상담실 18.9%, 청소년 상담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0.4%, 사설 상담기관(유료) 9.4%, 그 밖의 응답이 4.7%였다. 한국과 미국 모두 대학 상담기관 소속이 가장 많았다.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집단상담 윤리 인식 질문지(GCEI: Group Counselor Ethic Inventory)를 활용하였는데,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권경인, 조수연(2015a)이 국내외 출판된 집단상담 윤리연구 및 관련 자료, 국내외 학회 윤리강령, 집단상담 장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통합적으로 개관한 연구 내용을 기초 집단상담 윤리 요소로 추출하였다. 그 후 한국 숙련 집단상담자 29명에게 3차에 걸쳐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을 사용하여 집단상담 윤리 요소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통해 11개 범주, 143개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권경인, 조수연, 2015b). 도출된 143개 집단상담 윤리 하위요소 중 타당도와 중요도가 높은 문항의 선별, 중복된 구성요인을 삭제 및 통합, 모호한 문항에 대한 수정을 3차례에 걸쳐 반복 시행하여 최종 95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집단상담 윤리 인식 질문지(GCEI: Group Counselor Ethic Inventory)는 3개의 상위범주와

11개의 하위범주, 총 95개의 자기 보고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1개의 하위요소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에서 .91의 범위에 분포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타당도를 획득하였으며, 적합도 검증도 자료에 대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집단상담자 3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토와 집단상담자 9인에게 안면 타당도를 거쳐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후 양 국가 집단상담자들의 윤리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발한 집단상담 윤리 인식 질문지(GCEI)는 미국에서 상담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사과정생 1명과 미국의 박사후과정 1명의 번역 및 역 번역(back translation)의 과정을 거쳐 영문으로 번역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판과 동일한 미국판 집단상담 윤리 인식 질문지가 확정되었다.

GCEI의 문항은 집단원 권리 보호 및 교육 윤리, 집단상담자 전문성 및 책임 윤리, 집단상담 구성 및 과정 윤리의 3가지 상위범주 아래 총 11개의 하위범주 총 95문항으로 집단상담 윤리 인식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상위범주인 집단원 권리 보호 및 교육 윤리는 '비밀유지', '집단상담 참여', '상담 관계' 하위범주를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 상위 범주인 집단상담자 전문성 및 책임 윤리는 '윤리적 문제해결', '집단상담 수퍼비전', '집단상담자 가치관 주입', '집단상담자 책임', '집단상담자 전문성' 하위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위 범주인 집단상담 구성 및 과정 윤리는 '집단상담 구성', '오리엔테이션', '집단상담 종결'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참조).

표 3. 집단상담 윤리 인식 질문지 구성요소

상위범주	하위범주(문항예시)
집단원 권리보호 및 교육 윤리	비밀유지 집단상담자는 집단 내용을 외부에서 언급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집단상담 참여 집단상담자는 집단원이 집단참여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집단 활동 참여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담 관계 집단상담자는 집단상담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집단원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집단상담자 전문성 및 책임 윤리	윤리적 문제해결 집단상담자는 집단상담 윤리 기준과 관련 법령 간에 있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집단상담 수퍼비전 집단상담 수련감독자는 수련생과의 관계 중 윤리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경계를 지켜야 한다.
	집단상담자 가치관 주입 집단상담자는 필요하면 집단상담자의 가치관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해야 한다.
	집단상담자 책임 집단상담자는 자신의 전문역량 범위 내에서 집단상담을 시행해야 한다.
	집단상담자 전문성 집단상담자는 전문가로서 자격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고, 필요하면 제시해야 한다.
집단상담 구성 및 과정 윤리	집단상담 구성 집단상담자는 집단상담의 목표에 부합하는 집단규모와 대상을 고려하여 집단원을 선발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 집단상담자는 집단상담 과정 중 금지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집단상담 종결 집단상담자는 집단원에게 집단상담 참여를 중도에 중단할 권리와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분석 방법

한국과 미국의 집단상담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총 228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경력과 국가별 집단상담 윤리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먼저 미국 집단상담자를 경력별로 동일 하위 윤리 범주별 초심, 중간, 숙련 세 집단 간 집단상담자의 윤리 인식 차이를 일원변량 분산분석(ANOVA) 및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이어서 동일 윤리 범주에 따른 양 국가 간 중요도 인식 차이를 *t*-test로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 과

한국과 미국의 집단상담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집단상담 윤리 하위범주 상위 5개에 대한 순위를 범주별 평균 값 기준으로 목록화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는 초심과 숙련 집단상담자들의 중요성 인식 하위 범주의 유사성을 양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분석한 자료이다. 초심 집단상담자의 경우 상위범주 집단원 권리 보호 및 교육 윤리(이하 집단원 윤리)에서 한국은 ‘집단상담참여’와 ‘비밀유지’ 하위범주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미국은 ‘비밀유지’와 ‘상담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상위범주 집단상담자 전문성 및 책임 윤리(이하 집단상담자 윤리)에서는 한국은 ‘상담자 전문성’과 ‘상담자 책임’, ‘가치관 주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미국의 초심 집단상담자는 ‘가치관 주입’과 ‘수퍼비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 상위범주인 집단상담 구성 및 과정 윤리(이하 집단운영 윤리)의 경우 한국 초심 집단상담자는 상위 5개 순위 안에는 포함된 하위범주가 없었으나 미국은 ‘집단종결’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숙련 집단상담자들의 경우 집단원 윤리인 ‘집단상담 참여’, ‘비밀유지’, ‘상담 관계’에 대

표 4. 한국과 미국 집단상담자의 경력에 따른 중요 인식 하위윤리범주 상위 5순위

순위	상담자 경력	초심 집단상담자		숙련 집단상담자	
		한국	미국	한국	미국
1순위	B ⑧ 전문성	A ① 비밀유지	A ② 집단상담참여	A ① 비밀유지	
2순위	B ⑦ 상담자책임	B ⑥ 가치관 주입	A ① 비밀유지	C ⑩ 오리엔테이션	
3순위	A ② 집단상담참여	B ⑤ 수퍼비전	C ⑪ 집단종결	C ⑪ 집단종결	
4순위	B ⑥ 가치관 주입	A ③ 상담관계	A ③ 상담관계	A ② 집단상담참여	
			B ⑧ 전문성	B ⑥ 가치관 주입	
5순위	A ① 비밀유지	C ⑪ 집단종결	B ⑦ 상담자책임	A ③ 상담관계	
				B ⑤ 수퍼비전	

주. A = 집단원 윤리, B = 집단상담자 윤리, C = 집단운영 윤리

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집단상담자 윤리의 경우 한국의 숙련 집단상담자는 ‘상담자의 전문성’ 및 ‘책임’ 하위 범주에 대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미국 상담자의 경우는 ‘상담전문가의 가치관 주입’이나 ‘수퍼비전’ 등의 집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위범주를 윤리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집단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은 ‘집단종결’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미국은 ‘집단종결’ 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미국 초심 집단상담자의 상위 5개의 요소는 대부분 미국 숙련 집단상담자의 상위 5개에 포함되고 있고 순위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한국 초심 집단상담자는 한국 숙련 집단상담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 하위범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순위도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국가별 집단상담자의 상담경력에 따라 윤리 요소의 중요성 인식 평균 차이를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상담 윤리 범주별 초심, 중간, 숙련 세 집단 간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 및 사후검증(*Scheffe*)을 시행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한국 집단상담자의 경우 집단상담자 경력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집단상담 윤리 상위 3개의 범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16.97, p<0.001, F=5.44, p<0.01, F=3.12, p<0.05$) 숙련 집단상담자 그룹이 3개의 상위범주 모두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위범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하위범주도 있었다. ‘비밀유지’, ‘윤리 문제해결’, ‘집단상담자 가치관 주입’, ‘집단상담자 책임’, ‘오리엔테이션’ 하위 윤리범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 집단은 같은 수준의 중요도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집단상담자 전문성’ 하위범주는 숙련 집단상담자($M=4.28, SD=0.30$)보다 중간 집단상담자가($M=4.43, SD=0.33$) 중요도 인식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 집단상담자의 경우도 집단상담자 경력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집단상담 윤리 상위 3개의 범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F=8.19, p<0.001, F=5.84, p<0.05, F=15.52, p<0.001$) 사후검증의 내용은 한국의 양상과는 다른 측면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상위범주 모두에서 숙련 집단상담자가 가장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으나 미국은 ‘집단상담자 전문성 책임 윤리’에서는 중간 집단상담자($M=4.46, SD=0.26$)의 중요도 인식 평균값이 숙련 집단상담자($M=4.42, SD=0.23$)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상담 구성 및 과정 윤리’ 범주에서는 세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나, 사후검증 결과 중간 그룹과 숙련 그룹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15.52, p<0.001, ①$ 초심 < ② 중간, ③ 숙련). 더욱 자세한 집단상담 윤리 요소별 중요도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부 하위범주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상위범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비밀유지’, ‘상담관계’, ‘집단상담 수퍼비전’, ‘집단상담자 가치관 주입 책임’ 등의 하위범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집단상담자 책임, 전문성, 집단상담 구성’ 하위 범주의 경우 숙련 집단상담자보다 중간 집단상담자 그룹의 중요도 인식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집단상담자 경력이 증가할수록 집단상담 윤리 요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향상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표 5. 한국과 미국 집단상담자의 상담경력에 따른 집단상담 윤리 하위범주 인식 차이비교

윤리범주	상담자 경력	한국 집단상담자		미국 집단상담자		t
		M(SD)	F(scheffe)	M(SD)	F(scheffe)	
집단원 권리보호 및 교육 윤리	초심	4.26(0.19)		4.46(0.31)		-3.59**
	중간	4.32(0.22)	16.97*** ①②<③	4.58(0.36)	8.19*** ①<③	-3.70**
	숙련	4.53(0.21)		4.75(0.17)		-4.32***
비밀유지	초심	4.06(0.37)		4.69(0.40)		-1.08
	중간	4.60(0.36)	0.00 ①=②=③	4.68(0.39)	1.79 ①=②=③	-0.90
	숙련	4.61(0.36)		4.83(0.17)		-3.10**
집단상담 참여	초심	4.17(0.39)		4.08(0.36)		1.02
	중간	4.21(0.40)	24.09*** ①②<③	4.56(0.39)	36.74*** ①<②③	-3.84***
	숙련	4.69(0.19)		4.73(0.19)		-0.83
상담 관계	초심	3.86(0.34)		4.51(0.37)		-8.63***
	중간	4.03(0.46)	12.58*** ①②<③	4.48(0.38)	2.42 ①=②=③	-4.60***
	숙련	4.28(0.27)		4.66(0.28)		-5.30***
집단상담자 전문성 및 책임 윤리	초심	4.11(0.17)		4.27(0.26)		-3.31**
	중간	4.26(0.24)	5.44** ①<③	4.46(0.26)	5.84* ①<②	-3.46**
	숙련	4.22(0.23)		4.42(0.23)		-3.49**
윤리 문제해결	초심	3.92(0.28)		4.06(0.36)		-2.13*
	중간	3.95(0.37)	0.34 ①=②=③	4.39(0.39)	24.88*** ①<②<③	-4.94***
	숙련	3.98(0.38)		4.64(0.28)		-8.01***
집단상담 수퍼비전	초심	3.92(0.33)		4.61(0.38)		-8.96***
	중간	4.23(0.48)	10.28*** ①<②③	4.62(0.33)	0.27 ①=②=③	-4.20***
	숙련	4.25(0.25)		4.66(0.25)		-6.53***
집단상담자 가치관 주입	초심	4.08(0.40)		4.61(0.44)		-5.87***
	중간	4.10(0.43)	0.02 ①=②=③	4.63(0.36)	1.12 ①=②=③	-5.84***
	숙련	4.08(0.35)		4.73(0.23)		-8.71***
집단상담자 책임	초심	4.21(0.29)		4.14(0.34)		0.91
	중간	4.26(0.32)	0.46 ①=②=③	4.44(0.36)	7.05** ①<②	-2.33*
	숙련	4.27(0.33)		4.25(0.32)		0.14

표 5. 한국과 미국 집단상담자의 상담경력에 따른 집단상담 윤리 하위범주 인식 차이비교 (계속)

윤리범주	상담자 경력	한국 집단상담자		미국 집단상담자		t
		M(SD)	F(scheffe)	M(SD)	F(scheffe)	
집단상담자 전문성	초심	4.23(0.28)		4.24(0.29)		-0.10
	중간	4.43(0.33)	4.79*	4.41(0.26)	3.49*	0.16
	숙련	4.28(0.30)	①<②	4.32(0.33)	①<②	-0.44
집단상담 구성 및 과정 윤리	초심	3.57(0.74)		4.15(0.39)		-4.67***
	중간	3.69(0.79)	3.12*	4.52(0.38)	15.52***	-6.10***
	숙련	3.95(0.27)	①<③	4.53(0.27)	①<②③	-8.34***
집단상담 구성	초심	3.62(0.78)		3.94(0.54)		-2.32*
	중간	3.78(0.87)	5.99**	4.61(0.44)	14.75***	-5.32***
	숙련	4.20(0.45)	①②<③	3.97(0.74)	①③<②	1.48
오리엔테이션	초심	3.66(0.68)		4.43(0.60)		-5.79***
	중간	3.76(0.71)	0.31	4.55(0.48)	4.90*	-5.72***
	숙련	3.66(0.53)	①=②=③	4.79(0.29)	①<③	-10.52***
집단상담 종결	초심	3.31(1.03)		3.73(0.69)		-2.33*
	중간	3.43(1.05)	13.77***	4.50(0.43)	37.88***	-5.97***
	숙련	4.34(0.39)	①②<③	4.74(0.31)	①<②③	-4.48***

주. ① 초심, ② 중간, ③ 숙련

주. *** $p < .001$, ** $p < .01$, * $p < .05$

수 있다.

동일 상담경력에서 집단상담 윤리 요소의 중요성 인식에 대해 국가 간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집단원 권리 보호 및 교육윤리’, ‘집단상담자 전문성 및 책임 윤리’, ‘집단상담 구성 및 과정 윤리’ 3개의 상위 범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국가 간 중요성 인식 차이를 나타냈으며,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높은 중요성 인식수준이 전 경력에서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 국가의 윤리요소 중요성 인식 수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본 결과, 첫 번

째 상위범주 내 하위범주 중에서는 ‘비밀유지’는 초심과 중간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숙련 그룹($t = -3.10$, $p < 0.01$)에서는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이와 비교해 ‘상담관계’ 하위 범주에서는 모든 경력 그룹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만큼 낮은 중요성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 두 번째 상위범주 내 하위 범주에서는 ‘집단상담자 전문성’ 하위범주가 초심, 중간, 숙련 세 그룹 모두 양국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집단상담 수퍼비전’ 하위범주는 모두 유의수준 $p < .001$ 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미국 전체 경력 그룹에서 높이 나타냈다. 세 번째 상위범주 내 하위범주에서는 ‘집단상담 구성’ 하위 범주의 숙련 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위 범주, 모든 경력 그룹에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집단상담자 윤리 인식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별, 경력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도 인식 평균값에서 초심보다는 숙련 집단상담자의 윤리 인식이 모든 하위범주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 집단상담자의 경우 ‘집단상담자 전문성’ 하위범주는 중간 집단상담자가 숙련 집단상담자보다 중요도 인식이 높았고, 미국 집단상담자도 ‘집단상담자 책임, 전문성, 집단상담 구성’ 하위 범주의 경우 숙련 집단상담자보다 중간 집단상담자 그룹의 중요도 인식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상담 윤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개발되는 역량이 아니라고 이해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미 초심도 높은 수준의 윤리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Robinson과 Gross(1989)의 연구와 Shertzer와 Morris(1972)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학위 수준이 높으면 윤리 변별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수업 과목에서 반드시 1과목 이상의 상담윤리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위 수준이 높으면 윤리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초심 집단상담자부터 집단상담 윤리에 대한 교육 참여가 정규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이미 초심 집단상담자의 시점부터 윤리요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게 개발되어 있으므로 경력과 상관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집단상담자 전문성’이라는 하위범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하위범주에서 미국 집단상담자의 윤리 중요성 인식이 한국 집단상담자 윤리 인식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높은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 집단상담자의 경우 단순히 주어진 지식보다는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지식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Skovholt, & Rønnestad, 1992) 개인의 경험과 자아 성찰을 통해 전문성과 가치관이 발달한다(권경인 외, 2012). 그러므로 숙련 집단상담자는 임상 실제 경험이 증가할수록 윤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초심 집단상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윤리 교육 내용보다는 사회 문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숙련 집단상담자의 경우는 초심 집단상담자보다 윤리 인식의 중요도 강약을 판단할 때 사회 문화의 영향을 더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나라별 윤리 인식 비교를 할 때 집단상담자 전체의 윤리 인식 차이도 중요하지만 숙련 집단상담자의 윤리 인식 차이를 별도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숙련 집단상담자 그룹에 대한 양 국가 간 윤리 인식을 비교한 결과 ‘집단상담 참여’, ‘집단상담자 책임’, ‘집단상담자 전문성’, ‘집단상담 구성’ 범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범주에서 미국 숙련 집단상담자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중요성 인식을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문화적 사회적 인식에서 윤리에 대

한 중요성이 어떻게 전문영역 내에서 거론되고 다루어지고 있는가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속해서 전문가들에게 상담윤리를 강조하고, 관련 강령과 수칙을 개정하고, 배포하는 일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영향이 이처럼 윤리 인식의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윤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심 집단상담자는 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윤리 교육 개선과 강화 등을 통해 윤리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숙련 집단상담자는 사회 문화적 의식 수준의 변화를 통해 윤리 인식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윤리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들은 상담자 경력에 따라 달라야 한다.

둘째, ‘집단원 권리 보호 및 교육 윤리’는 한국과 미국 집단상담자 모두 상담 경력과 상관없이 동일 경력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상담 윤리 범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상담 참여’ 하위 범주는 집단원의 복지, 비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사전동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윤리범주로, 집단원의 복지를 가장 중요한 윤리 이슈로 인식한다는 선행 연구와 그 맥락이 같은 결과이다 (Behrs, & Gutheil, 2001; Corey et al., 2013; Fallon, 2006; Kivlighan, Kivlighan, & Cole, 2012). 또한, 본 연구결과 집단상담자의 윤리 중요도 인식에서 ‘비밀유지’ 하위범주도 경력 및 국가와 상관없이 상위 중요도 순위로 나타났는데, 24개국의 윤리 강령을 비교한 Leach와 Harbin (1996)의 연구에서도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가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윤리강령으로 나타나 문화와 관계없이 집단원의 비밀 보호는 중요한 요인일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비밀유지’ 하위 범주는 집단상담자의 국가

와 경력에 상관없이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장 첨예한 윤리 이슈 중 하나이다(강진령 외 2009; 고향자, 김소라, 2008; Lasky, & Riva, 2006; Richie, & Huss, 2000). 비밀유지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집단원들에게 알리거나 비밀유지의 예외 상황을 집단사전에 집단원들에게 공지하는 것, 기록물 관리, 수퍼비전 공개 범위에 대한 등급 등 비밀보장에 대한 세부적 사항들을 구조화하여 관리되고 교육될 필요가 있다(권경인, 조수연, 2015a). 숙련 집단상담자들이 많은 집단을 진행하면서 비밀유지 이슈가 다른 윤리 이슈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집단원들의 요구나 필요 이외에도 비밀유지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상담자의 비밀유지는 단순히 개인적 책임뿐 아니라 집단원 전체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범주이므로 이에 대한 집단원들의 인식, 행동에 대한 주요 지침과 한계에 대한 사전 공지 및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상담 관계’는 집단원과 집단상담자, 기관과 집단상담자, 집단원과 집단원, 집단상담자와 집단상담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 한국 집단상담자들에게 전문적인 관계와 인간적 관계에 대한 구분과 균형은 많은 윤리적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고향자, 김소라, 2008; 박외숙, 2008). 한국 문화에서 집단상담은 전문적인 관계와 인간적 관계가 동시에 형성되고 집단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상담자를 특정 영역의 전문가이자 마음의 어른으로 모시는 경향들은 이런 상담 관계의 윤리적 이슈를 더 많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에 대한 연구(김창대, 권경

인, 한영주, 손난희, 2008)에서도 상담자들의 관여 및 개입에 있어 사적인 관계 측면이 주요 특징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모든 관계는 비윤리적일 수 있으므로 집단상담자는 이런 관계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이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Crespi, 2009). 상담에서 이루어진 이중관계의 초기연구들은 이중관계의 해로움,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대립적 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Johnson, & Nelson, 1999; Nelson, & Friedlander, 2001; Sullivan, & Ogloff, 1998; Veach, 2001). 최근 비성적 이중관계가 미치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국내 상황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개정된 윤리강령에서는 별도의 집단상담 윤리 항목을 보완하였고, 이중관계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기준 마련과 윤리 인식에 대한 강조가 집단원 권리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집단상담자 전문성 및 책임 윤리범주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집단상담 수퍼비전’ 범주가 숙련 집단상담자의 윤리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고, 미국의 경우 ‘윤리 문제해결’ 하위 범주에서 집단상담자 경력에 따른 윤리 인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집단상담자 전문성과 책임에 관한 윤리 범주 중 ‘윤리 문제해결’ 하위범주의 경우 한국 집단상담자는 초심, 중간, 숙련 모두 경력 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 인식을 보였다. 반면 미국 집단상담자의 경우 초심자의 경우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숙련자가 되었을 경우 매우 큰 윤리 인식 차이를 보이며, 한국 숙련자와도 중요성 인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집단상담자가 개인별

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이나 훈련과정으로 인식변화에 한계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세분된 윤리 강령 및 관련 지침, 윤리 관련 전문 위원회 등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측면의 영향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집단상담 수퍼비전’ 하위 범주에서도 미국의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모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교육 및 수련 과정이 공식화되어 있고, 관리감독의 체계가 통일되어 있으며, 수련감독의 중요성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고려 사항과 주의 사항을 지속해서 관리감독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 문화와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전문영역에서도 집단원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보이는 ‘윤리 문제해결’, ‘집단상담 수퍼비전’, ‘집단상담자 가치관 주입’ 하위범주를 더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집단원들 또는 집단과정 못지않게 집단상담자 자신의 역량과 책임에 대한 윤리적 인식은 다른 영역의 윤리적 인식의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문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Association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2000; Corey, Corey, & Callanan, 2007). 집단상담자는 상담경력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경험과 자아 성찰을 통해 전문성과 가치관이 발달하는 특성이 있다(권경인 외, 2012). 따라서 집단상담자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자각을 하려는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초심 집단상담자와 구분되는 집단상담 윤리 교육 방식과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상담 전문가의 개인적 선호도와 성실성에 대한 전문성 발달이 아닌, 최소 집단상담 시행을 위한 전문가 공통 역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역량별

차별화된 교육 및 전문성 관리 감독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Hofstede(1980)에 의하면 미국은 불확실성 지수가 높은 나라이므로 불확실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규칙이 필요하므로 법률과 규칙이 잘 발달하여 있고, 윤리가 발전하였다. 반면 한국은 불확실성 지수가 낮은 나라이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윤리 발전이 더디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의 문화 성격도 점차 변해가고 있으며, 집단상담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만큼 관련 분쟁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윤리 관련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보다 세분되고 구체적인 윤리 강령을 교육 과정에 포함 시키고, 전문가 책임 및 전문성에 대한 윤리적 수련 프로그램 시스템 등이 한국에도 연계 및 기획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집단상담 구성 및 과정 윤리 범주에서 한국과 미국 집단상담자 윤리 중요도 인식은 미국 집단상담자가 높은 평균 우위의 윤리 인식을 보였다. 심지어 한국 숙련 집단상담자의 윤리 인식 평균값보다 미국 초심 집단상담자의 평균 윤리 인식 점수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실제로 집단상담 구성 및 과정 윤리는 집단구성부터 종결까지의 많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에 대한 윤리적 예방과 해결 방안으로 현장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배포하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전문가에게 시대적 흐름과 문화, 전문성의 측면에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학회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력이 전문가 윤리 인식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상담 수련

과정에서 윤리적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며,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 운영 및 관리에 수련감독자를 반드시 배치하여 지속적인 윤리적 맥락의 중요성에 노출되고 모델링 되는 환경에서 상담을 수련 받는다. 그리고 해마다 이러한 윤리적 실천 행동이 우수한 전문가 또는 기관을 표창하고 그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집단상담 장면에서 윤리적 관점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학문적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비자발적 내담자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집단 종결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며, 그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어떻게 집단원 관점에서 돕고 관리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관점도 확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Corey, Williams, & Moline, 1995).

반면, 한국 집단상담 운영 과정은 일례로 집단원 선발 과정부터 많은 윤리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으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다. 사전 스크린 과정의 결여, 비자발적 집단 참여 등이 문제점으로 주목받지만, 현실적 대안을 갖지 못한 채 집단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담료의 경우에도 계약을 집단상담 전에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이행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담자와 집단원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들은 현장의 주요 고민일 수 있다. 또한, 대학상담실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자의 경우 특히 동질집단으로 집단상담자와 집단원간의 학내 이중관계 및 집단원간 사전관계에 따른 하위집단 생성 등이 상담 현장에서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이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모호한 상태이다. Pepper(2007)는 학교뿐만 아니라 입원 치료에서의 집단이나 집단상담 훈련기관 내에

이중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여기에는 이중관계 위협에 대한 맹점이 있다고 보았다. 대다수의 전통적인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는 전문가 또는 슈퍼바이저 교육을 위해 교수자나 박사과정생들이 석사과정생들을 대상으로 경험집단을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야기된다(권경인, 계은경, 김지연, 2017; Davenport, 2004; Furr, & Barret, 2000). 그리고 집단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의 긍정적 효과성을 기대한 나머지 청소년 상담 기관의 경우도 학내 처벌집단 운영에 대한 의뢰 및 비자발적 청소년 집단상담 구성 및 상담환경 등이 윤리적 이슈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도 전문가에 따라 인식하고 고려하는 차이가 큰 것으로 미루어 짐작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집단상담자들이 집단상담 윤리 교육 이수 및 윤리강령에 대한 숙지 여부를 통해 집단상담자의 윤리 인식 비교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단상담 윤리 교육 및 윤리강령이 전문가의 윤리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인별로 직접적 검토한 연구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집단상담자의 소속 기관의 시스템 및 상담업무 환경에서의 윤리적 역할의 차이로 인한 집단상담 윤리 인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통제하지 못했다. 셋째,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가 실제 집단상담 윤리 인식에 대해 중요성을 응답했을 뿐 아니라 전문적 바람직성을 고려해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외현적 행동의 직접적인 측정이 어렵고, 답안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제한점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초심 집단상담자의 경우

전문성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윤리적 민감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본 측정 도구가 집단상담자의 집단상담 윤리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지가 아닌, 주요 집단상담 윤리요소를 목록화하여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가 집단상담자의 윤리 역량을 측정했다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넷째, 연구참여자의 성별 편향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집단상담자의 보편적 내용으로 일반화시켜 이해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윤리 인식에 성별은 주요한 관련 변인이거나,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양 국가 모두 70% 이상의 여성 중심의 상담자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집단상담 윤리의 중요 범주에 관해 한국과 미국의 집단상담 전문가의 윤리 인식 차이를 비교 및 검토하였고, 둘째, 국가별 집단상담자의 윤리 인식 차이 및 미흡한 집단상담 윤리 인식범주를 도출하였다. 셋째, 집단상담자의 집단상담 윤리에 관한 중요성 인식은 양 국가 모두 단순히 상담자 경력이 증가하면서 모두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경향성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상대적으로 집단상담 윤리 교육이 교과목 수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대표 상담 관련 학회에서 집단상담 윤리강령에 대한 강조 및 활성화 노력이 활발하며, 현장 윤리를 별도로 구분하고, 시대에 맞도록 개정의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의 경우 집단상담자의 윤리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집단상담 현장 윤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노력 등이 전문가 윤리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집단상담의 질적 관리 및 전문성 발전을

위하여 집단상담자 윤리교육 과정 및 전문가 수련 내용에 더욱 상세한 교육 훈련 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초심 집단상담자뿐 아니라 숙련 집단상담자의 집단상담 윤리 교육의 필요성도 고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후 집단상담 윤리 교육 경험 및 전문가 윤리가 강조되는 학문적 문화 속에서 전문가들의 집단상담 윤리 인식 및 실천 행동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9). 상담자 윤리. 서울: 학지사.
- 고향자, 김소라 (2008). 집단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다중관계 윤리에 대한 고찰. 아시아 교육연구, 9(1), 49-72.
- 권경인, 계은경, 김지연 (2017). 집단상담 수업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어려움과 대안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1), 181-204.
- 권경인, 조수연 (2010). 국내 집단상담 연구의 최근경향과 과제. 인간이해, 31(2), 63-84.
- 권경인, 조수연 (2015a). 집단상담 윤리: 개관. 상담학연구, 16(4), 65-88.
- 권경인, 조수연 (2015b). 집단상담 윤리 요소 도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연구, 16(5), 1-22.
- 권경인, 지희수, 강신호, 김미옥. (2012). 집단상담자 발달 모형-전문성 발달의 단계, 주요 주제 및 특성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33(1), 73-102.
- 김계현 (2010). 상담심리학 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영옥 (2003). 윤리 이데올로기가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언론학보, 47(2), 107-133.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화자 (2014). 한국과 미국의 상담윤리 규정 비교 연구. 복음과 상담, 22(1), 9-50.
- 노안영 (1998). 한국과 미국의 상담심리학자들이 지각하는 지혜의 비교. 한국대학상담학회지, 9(2), 217-243.
- 명대정 (2000). 상담의 전문직화 방안 : 주요전문직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의 선례분석을 기초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외숙 (2008). 집단참가자의 접촉경계유형과 잠재적 이중관계에 대한 윤리 인식. 상담학연구, 9(2), 501-515.
- 서영석 (2005). 내담자의 정서표현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35-351.
- 오연수, 한재희 (2009). 상담전문가 발달과정에서의 좌절극복경험 분석. 상담학연구, 10(1), 109-124.
- 이미선, 권경인 (2009). 집단상담: 집단상담자 경력에 따른 집단상담 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학연구, 10(2), 911-931.
- 이지영, 남숙경, 박희락, 김동현, 이미경, 이상민 (2008). 상담경력파 상담자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23-42.
- 최해림 (2002). 한국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05-828.
- Association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2000). ASGW professional standards for the training of group workers. *Journal for Specialists in*

- Group Work*, 25(1), 327-342.
- Beahrs, J., & Gutheil, T. (2001). Informed consent in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 4-10.
- Beck, A. P., & Lewis, C. M. (2000). *The process of group psychotherapy: Systems for analyzing chang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abender, V. (2006). The ethical group psychotherapist.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6(4), 395-414.
- Browne, F. (2002). *An investigation into the identification of critical incidents by group leader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Burlingame, G. M., Fuhriman, A., & Mosier, J. (2003). The differential effectiveness of group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perspectiv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1), 3-12.
- Burlingame, G. M., MacKenzie, K. R., & Strauss, B. (2004). Small group treatment: Evidence for effectiveness and mechanisms of change. In A. E. Bergin & L. L. Garfiel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pp. 647-679). New York: Wiley.
-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2007). *Issues &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7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Thomson Learning.
- Corey, M. S., Corey, G., & Corey, C. (2013). *Groups: Process and practice*. Cengage Learn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Corey, G., Williams, G. T., & Moline, M. E. (1995). Ethical and legal issues in group counseling. *Ethics & Behavior*, 5(2), 161-183.
- Crespi, T. D. (2009). Group counseling in the schools: Legal, ethical, and treatment issues in school practi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6(3), 273-280.
- Davenport, D. S. (2004). Ethical issues in the teaching of group counseling.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29(1), 43-49.
- Fallon, A. (2006). Informed consent in the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6(4), 431-453.
- Fuhriman, A., & Burlingame, G. M. (2001). Group psychotherapy training and effec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1(3), 399-416.
- Furr, S., & Barret, B. (2000). Teaching group counseling skills: problems and solution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2), 94-104.
- Gladding, S. T. (2008). *Groups: A counseling specialty*.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Graff, F. S., Griffin, M. L., & Weiss, R. D. (2008). Predictors of dropout from group therapy among patients with bipolar and substance use disorde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94(1), 272-275.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Intercultural cooperation and its importance for survival.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 Iraw-Hill.
- Johnson, W., & Nelson, N. (1999). Mentor-protégé relationships in graduate training: Some ethical concerns. *Ethics & Behavior*, 9(3), 189-210.

- Kaplan, D. M., Francis, P. C., Hermann, M. A., Baca, J. V., Goodnough, G. E., Hodges, S., & ... Wade, M. E. (2017). New Concepts in the 2014 ACA Code of Ethic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5*(1), 110-120.
- Kivlighan Jr, D. M., Kivlighan III, D. M., & Cole, O. D. (2012). The group's absence norm and commitment to the group as predictors of group member absence in the next session: An actor-partn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41-49.
- Kivlighan Jr, D. M., & Quigley, S. T. (1991). Dimensions used by experienced and novice group therapists to conceptualize group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15-423.
- Lasky, G. B., & Riva, M. T. (2006). Confidentiality and privileged communication in group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6*(4), 455-476.
- Leach, M. M., & Harbin, J. J. (1996). Psychological ethics codes: A comparison of twenty-four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3), 181-192.
- Mangione, L., Forti, R., & Iacuzzi, C. M. (2007). Ethics and endings in group psychotherapy: Saying good-bye and saying it well.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7*(1), 25-40.
- McCarthy, C. J., Falco, L. D., & Villalba, J. (2014). Ethical and professional issues in experiential growth groups: Moving forward.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39*(3), 186-193.
- McRoberts, C., Burlingame, G. M., & Hoag, M. J. (1998). Comparative efficacy of individual and group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perspectiv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2), 101-117.
- Nelson, M. L. & Friedlander, M. L. (2001). A close look at conflictual supervisory relationships: The trainee'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384-395.
- Pepper, R. (2007). Too close for comfort: The impact of dual relationships on group therapy and group therapy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7*(1), 13-24.
- Ritchie, M. H., & Huss, S. N. (2000). Recruitment and screening of minors for group counseling.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25*(2), 146-156.
- Robinson, S. E., & Gross, D. R. (1989). Applied ethics and the mental health counselor.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1*(3), 289-299.
- Shertzer, B., & Morris, K. (1972). APGA members' ethical discriminatory abilit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1*(3), 200-206.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505-515.
- Sullivan, L., & Ogloff, J. (1998). Appropriate supervisor graduate relationships. *Ethics and Behavior, 8*(3), 229-248.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In G. Verna & C. Bagley (eds.),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 London: Macmillan.
- Veach, P. M. (2001). Conflict and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counterproductivity in supervision-when relationships are less than ideal: Comment on Nelson and Friedlander and Gray et al. (2001).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396-400.

Welfel, E. R. (2012). *Ethic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Standards, research, and emerging issues* (4th ed). CA: Brooks/Cole.

원 고 접 수 일 : 2018. 05. 17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7. 30

게 재 결 정 일 : 2018. 09. 28

Counselor Experience and Group Counselor Ethical Awareness: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U.S. Group Counselors

Kyoung In Kwon

Kwangwoon University

Tae Sun Kim

Hanyang University

Su Yeon J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Korean and U.S. group counselors' views on important ethical factors in relation to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and ethical awareness. A total of 228 group counselors (Korea: 122, U.S.: 106) completed the Group Counselor Ethical Inventory (GCEI) to assess prevailing beliefs about important factors pertaining to group counseling ethics. Finding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unselors' perceptions concerning the importance for Ethics of Member Rights' Protection and Education, Ethics of Group Counselor Expertise and Responsibility, and Ethics of Group-Counseling Composition and Process among novice, intermediate and expert group counselors in both Korea and the U.S. U.S. group counselors rated overall ethical factors as more important than did Korean group counselors, with the exception of Confidentiality, Group Participation, and Group Counselor Responsibility and Expertis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reviewed from educational and cultur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for group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 group counseling ethics, group counseling, ethics, culture comparison, group counselor